

# ‘제품안전관리 · 경고표시강화 · 창구정비 · 보험가입’으로 무장



PL법 시행에 대비 3년전부터 전사적 준비, 7년동안 무난  
‘주의경고 · 행위강제 · 행위금지’ 마크 등 표시요령 철저 강화

■ 박은환 / 농약공업협회 홍보부장

**약** 13여년에 걸쳐 국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체는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각 기업은 PL법 시행에 대응하여 제품의 개발과 제조공정의 관리는 물론 출하, 수송,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로의 제품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해된다. 또한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사용자에게 종래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철저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농약공업협회에서는 PL전문가를 초

청, 농약산업의 PL법 대응방안에 관하여 경영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 큰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회사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7년에 이르고 있다.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위하여 농약공업협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5일동안 농약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 시행하고 있는 일본농약업계의 대응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약공업협회를 비롯 16명의 방문단을 구성, 일본농약공업회(JCPA)의 협조를 얻어 일본농약공업회 및 화학제품 PL 상담센터, 호코화학, 니혼소다(주) Ja그린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일본 선진기업들의 PL대응전략은 1995년 7월 1

일 PL법 시행에 대비, 3년전부터 각분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전사적으로 대비하였다.

주요 대응전략을 보면 첫째, 연구개발 단계부터 원재료 구입, 제조·공정, 검사 등 결합제품의 방지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를 종래이상으로 강화하였고 둘째, 농약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올바른 농약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고 표시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셋째, 기업의 PL대응 창구정비와 PL보험가입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방문단이 직접설명 듣고 보고 온 농약용기 표시요령 개선 및 광고기준 개선, 호코화학의 대응 사례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일본 농약업계의 대응

### 가. 농약용기 표시요령 개선

#### 1) 농약라벨상의 주의환기 마크의 그림표시

먼저 주의경고 마크를 보면 주의사항의 제목앞에 기재하고 흑색(또는 문자 사용색)으로 표시한다.

[예]		
	효과·약해 등 주의	안전사용상 주의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증유발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 경고표시로서 기재함		
[예]	(안전사용상 주의)	
	경고 본제는 의약외 독물에 해당	
	- 취급에 충분히 주의한다	

행위의 강제마크는 주의(경고를 포함) 사항을 기재한 문장의 앞부분에 청색(또는 문자 사용색)으로 표시한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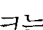







행위금지의 마크는 주의(경고를 포함) 사항을 기재한 문장의 앞부분에 는 적색, 그림은 흑색(또는 문자사용색)으로 표시한다(표 2).

표 1. 행위의 강제마크

그림표시 마크와 주의사항(예)	기준마크
 살포시는 농약용 마스크 (방호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 착용
 살포액조제시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약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안경 착용
 살포시는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한다	고무장갑 착용
 살포시는 불침투성 방제복을 착용한다	방제복 착용
 꼭 농약보관창고(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엄중 보관
 기타 행위의 강제로 환기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호의 하단 또는 근처에 의미하는 문자를 넣는다	

표 2. 행위금지의 마크

그림표시 마크와 주의사항(예)	기준마크
 어독성·수산동물에 강한 영향이 있다. 하천, 호수, 해역, 양식장에 비산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패류 주의
 누에에 장기간독성이 있으므로 부근에 뽕밭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누에주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살포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용한 작물등에 접촉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주의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꿀벌 및 꿀벌상자에 절대 날아가지 않도록 살포전에 양봉업자 등과 안전대책을 충분히 협의한다	꿀벌 주의
 하우스내와 분무가 차기쉬운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사용금지의 경우, 육묘상자에 사용금지의 예와 같이 기호부근에 사용금지의 문자와 의미하는 문장을 기재한다	
 음용금지	

2) PL법 대응관련 대상별 주의사항

주 의 사 항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벨을 잘 읽은후에 사용한다</li> <li>○ 기재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li>○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는 놓아두지 않는다</li> <li>○ 도난 분실때는 경찰서에 신고한다</li> <li>○ 빈봉지(빈용기)는 포장 등에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한다</li> <li>○ 빈용기 등은 방치않고 안전하게 처리한다</li> <li>○ 자동차 등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도장오염)</li> <li>○ 하우스내에서의 살포후는 충분히 환기후 입실한다</li> <li>○ 마시지 마십시오. 또는 음용금지</li> <li>○ 반드시 농약보관상자에 넣어서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한다</li> <li>○ 식품(음식물)과 구별하여 보관한다</li> <li>○ 풍향 등을 고려해서 주변의 자동차, 세탁물, 완구 등에 살포액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li> <li>○ 임신중에는 취급 않는다 ○ 음주후는 취급을 피한다 ○ 실내에서는 사용않는다</li> <li>○ 사용량에 맞추어서 약액을 조제하여 사용한다</li> <li>○ 본제는 의복 등에 부착되면 착색이 되므로 취급에 주의한다</li> <li>○ 살포기구, 작업복 등은 반드시 양잠작업 옷과 구별할 것</li> <li>○ 난방기구 근처에는 보관하지 않는다</li> <li>○ 누출시는 보호구를 착용해서 수건, 모래 등에 흡수하여 회수한다</li>   <li>○ 공원, 뚝 등에서 사용할 경우는 어린이와 살포에 관계없는자가 작업장 근처에 오지 않도록 배려한다. 거주자, 통행인, 가축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충분히 한다. 또한 살포 후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당일은 살포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표찰을 세우는 등 배려한다.</li> </ul>	<p>전약제, 기재부분에 잘 띄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독극물에 지정된것</p> <p>수화제, 수용제, 분제, 입제 등</p> <p>가정원예제</p> <p>유기용제를 사용한 제제 염려가 있는것</p> <p>산포제 시설에 적용되어 있는것</p> <p>펫병, 유리병 등 100ml이하</p> <p>독물 상당</p> <p>전약제</p> <p>가정원예제</p> <p>가정원예제</p> <p>희석제</p> <p>착색염려가 있는 약제</p> <p>피레스로이드계</p> <p>가정원예제(에어졸제 등)</p> <p>유제, 액제 등 액체 독극물법 및 PRTR 법에 의한 정보제공의 필요가 있는것</p> <p>비농경지에 적용되어 있는 제초제</p>

**나. 농약의 광고기준 개정**

농약 라벨(포장지)이외에 팜플렛류 등에 광고 시는 라벨을 잘 읽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기재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등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2. Hokko chemical의 대응**

제조물책임(PL)에 대한 호꼬케미컬(北興化學)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보면 △연구개발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의 제품안전성 확보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철저 △유통단계에서의 피해방지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용 철저 △사고의 미연방지, 신속한 대응 △분쟁의 해결, 사고

재발 방지 △긴급조치 등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제품 안전성 확보**

안전성 체크 항목으로 원제 및 제품안전성과 제조·사용안전, 환경 영향 기타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보제공의 의무화, 독극물법, PRTR법 등 제품 안전데이터시트(MSDS)의 정비, 활용 관계법령에 정해진 시험데이터 보충 등을 들 수 있다.

**나. 제조단계에 관한 안전성 확보**

PL조항을 추가하고 납입사양서 정비, MSDS 입수 등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ISO-9002시스템 운용에 의한 품질관리철저, 특히 제초제는 공정 관리에 의한 이물질 혼입방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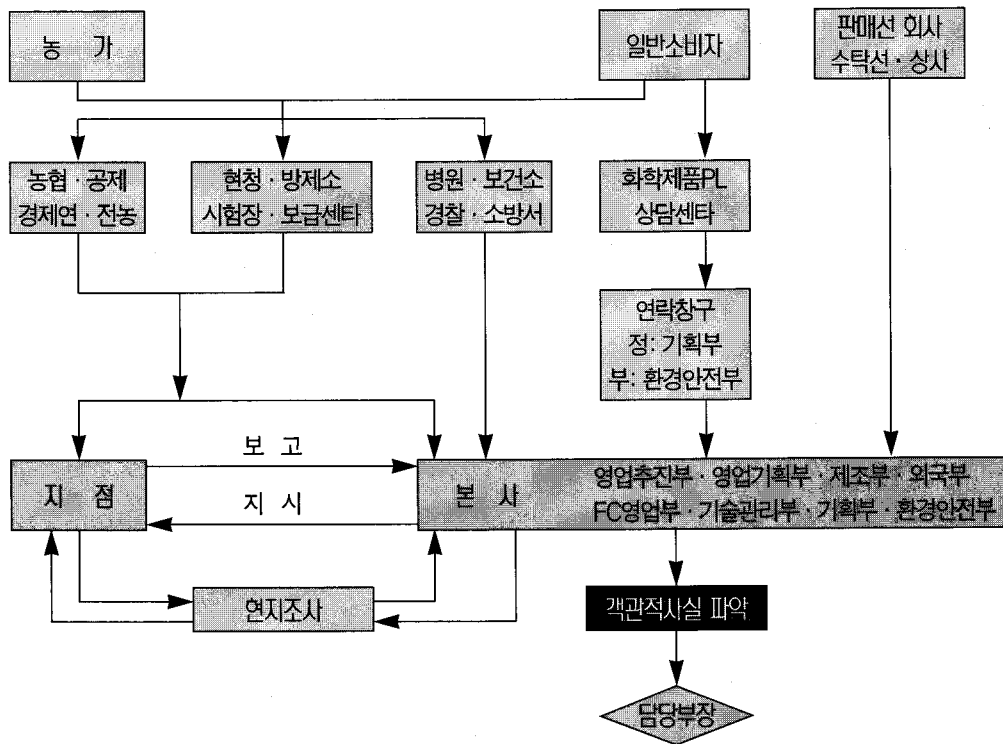


그림 1. 제품사고 및 클레임 대응절차

**다.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철저**

농약공업회에서 설정한 주의·경고·강제·금지마크 등 '농약용기표시요령'에 근거하여 표시하고 전품목 기재항목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표시사항을 보충한다.

**라. 유통단계에 관한 피해방지**

PL조항 삽입 등 판매계약서를 정비하고 운송보관상 안전대책으로 운송보관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긴급연락카드의 사용절차를 들수 있다.

**마.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용 철저**

농협 영농지도원 및 농업시험장 등 지도기관, 판매업자와 협력을 도모하고 포스터, 팸플릿, 기술자료를 배포, 농약 적정사용 운동을 추진한다.

**바. 사고의 미연방지, 신속한 대응**

ISO-9002 및 ISO-14001, RC활동 등 사내에서의 제품안전교육을 충실히 하고 PL대응창구 및 PL대책위원회 설치 등 사내체제를 정비하며 처리요령의 정비로 제품사고 및 클레임에 대응한다.

**나. 분쟁의 해결, 사고의 재발방지**

사고 원인 규명 및 재판의 분쟁처리, 사고 및 클레임 정보를 제품개선에 반영하고 적정사용 및 오·남용방지를 위한 라벨 표시 등을 개선한다.

**아. 긴급조치**

원인규명에 앞서 사전 대응하는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해 조치하고 PL보험 등에 가입한다. **농약정보**